

建築界뉴 - 스

奢侈性建築許可에住宅債券消化

經濟長官會議는庶民住宅建設拡大方案으로建築抑制措置를全面적으로解除함과同時に奢侈性建物과豪華住宅建築許可時에國民住宅債券을消化케하여庶民住宅資金造成拡大를骨字로하는住宅建設促進法施行令改正案을議決한다.

經濟長官會議가24日議決한住宅債券消化方案을보면住居用住宅의경우 $165m^2$ 이 $231m^2$ 미만은 $3,3m^2$ 당1만원의債券消化하는것을비롯해서 $6百60m^2$ 以上은 $3.3m^2$ 당5만원을消化해야하며住居用以外의建物로서劇場,映画館,카바레등은 $3.3m^2$ 마다1만원으로하고鉄骨造의경우에는3만원練瓦造및市道別債券消化基準은다음과같다.

첨가매입대상	첨가 매입총액
• 건축허가 연 면적 165평 방미 터이상(공동주택 인정 우는 세대 당 연면적으로 하며 증축으로 인한 연면적의 증가로 165평 방미 터 이상이 되는 때에는 73. 2. 26이전의 기존건물 연면적을 제외한 증가면적에 한하여 해당기준에 따라 첨가매입토록 한다) 가) 주거전용 건축물(주거용과 비주거 용이 혼합된 건축물은 주거부분이 50퍼센트 이상에 한하여 주거전용으로 본다) 1) 165평 방미 터이상 231평 방미 터 미만. 3.3 평 방미 터 10,000 2) 231평 방미 터이상 330평 방미 터 미만. 3.3평 방미 터 당 20,000 3) 330평 방미 터이상 600평 방미 터 미만. 3.3평 방미 터 당 30,000 4) 666평 방미 터 이상 3.3평 방미 터 당 50,000 나) 주거전용이외의 건축물(다만 공장의 경우는 인구 50만인 이상의 지역에 한하여 재무 장관이 건설부장관과 합의하여 정하는 교육용, 종교용, 자선용, 기타 공익용과 축산업등에 쓰이는 건축물은 제외) 1) 극장·영화관·빠·카바레·요정 오락장 및 사치성 유흥용 건축물 3.3평 방미 터 당 10,000 2) 기타 철근 및 철골조의 건축물 3.3평 방미 터 당 3,000 3) 연와조 및 석조의 건축물 3.3평 방미 터 당 2,000 4) 시멘트 벽돌 및 블록조의 건축물 3.3평 방미 터 당 1,000 5) 관광사업 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관광호텔 3.3평 방미 터 당 1,500 다) 기타 유홍음식점 영업 및 음식점 영업은 허가(음식점 영업은 객석과 객실을 합한 면적이 50평방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1) 서울특별시·부산시, 대구시, 인천시 150,000 2) 각 도청소재지 100,000	

3) 기타 지역	70,000
라) 유제품·마아가린 및 쏘트닝유, 식육제품, 통조림 또는 병조림, 청량 음료 및 당류 제조업 허가	
1) 서울시·부산시·대구·인천	200,000
2) 각 도청 소재지	150,000
3) 기타지역	100,000
다) 여인숙업(연면적 165평 방미 터이상에 한한다.)	100,000
1) 서울시·부산시·대구시·인천시	70,000
2) 각 도청소재지	50,000
부동산 등기	
가) 소유권 보존 또는 이전	
1) 주거전용 건축물	
건축물(토지 포함)의 폐세 표준액이	폐세 표준액의
가. 1,000만원 이상	20 / 1,000
2,000만원 미만	
나. 2,000만원 이상	30 / 1,000
3,000만원 미만	
다. 3,000만원이상	35 / 1,000
4,000만원미만	
라. 4,000만원 이상	40 / 1,000
5,000만원 미만	
마. 5,000만원이상 1억미만	50 / 1,000
바. 1억이상	60 / 1,000
2. 주거전용 건축물이외의 부동산	
폐세 표준액이	폐세 표준액의
가) 1,000만원이상 5,000만원 미만	20 / 1,000
나) 5,000만원이상 1억 미만	30 / 1,000
다) 1억 이상	40 / 1,000
나. 상속 보존	
폐세 표준액이	폐세 표준액의
1) 1,000만원이상 3,000만원 미만	20 / 1,000
2) 3,000만원이상 1억 미만	30 / 1,000
1억이상	50 / 1,000
다. 저당권 설정 및 이전	
폐세 표준액이 500만원이상	폐세 표준액의 (다만 첨가 입금액은 5,000만원을 초과못함)